

제12조 【계약기간】

1. 장기요양 서비스 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.
2. 등급 변경, 수가 변경, 월한도액 변경, 본인부담금 자격변동 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재계약을 할 수 있다.
3.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.

제13조 【계약목적】

1.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- 1)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부양욕구(장기요양서비스에 한함)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 - 2)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 - 3) 명확한 해당제도·계약내용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장기요양급여서비스 제공
2. 서비스 계약체결 :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,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.

※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※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4조 【월 이용료】

1.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.
2.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%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. 단,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%,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%, 6%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.
3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발생은 본인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4.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“행복한동행재가노인복지센터” 본인부담금 통장계좌로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 (청구 후 30일 이내)
5. 본인 및 보호자(신원인수인)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,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/SNS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.
6. 2025년 장기요양급여 표준 수가표

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이용료 및 본인부담 사항 안내

■ 재가 서비스 월 한도액

(단위 : 원)

장기요양 등급		1등급	2등급	3등급	4등급	5등급
월 한도액		2,512,900	2,331,200	1,528,200	1,409,700	1,208,900
부담 구분	공단 (85%)	2,135,965	1,981,520	1,298,970	1,198,245	1,027,565
	본인 (15%)	376,935	349,680	229,230	211,455	181,335

■ 본인부담금 : 일반 수급자 : 월 한도액까지는 15 %, 의료(경감) 수급자 : 월 한도액까지는 6 %, 9% 기초생활수급자 : 0 %

■ 재가 서비스 1회당 급여수가 / 본인부담금(15% 기준)

방문요양	구 분	30분	60분	90분	120분
	수 가	17,450	25,320	34,120	43,430
	본인부담금	2,618	3,798	5,118	6,515
	구 분	150분	180분	210분	240분
	수 가	50,640	57,020	63,530	70,080
	본인부담금	7,596	8,553	9,530	10,512
	비 고				
방문목욕	구 분	차량 목욕시	전신입욕	간편 / 미입욕	
	수 가	88,990	80,230	50,100	
	본인부담금	13,348	12,034	7,515	